

의안번호	2208248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5. 4. 9.
추계번호	25B0919

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원 (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	100	-	-	-	-	100	20

주: 정부의 유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사업 추진 방식 및 용역 단가 등에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섬 지역의 주민의 해상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공영항로의 지정·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항로(이하 “공영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6조(해상대중교통시설 축조 및 서비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대중교통 이용객이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여객터미널, 선착장 등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을 축조하거나 관련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축조 또는 관련 서비스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7조(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해상대중교통운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해상대중교통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6	안 제8조(선박 건조자금 등의 지원)	국가는 해상대중교통수단의 안전운행과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노후 선박의 교체를 위한 건조자금과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7	안 제9조(운임과 요금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0조(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 등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객이 여객터미널과 기항지에서 안전하게 승·하선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객선 및 도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및 도선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1조(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객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예약·예매하고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대중교통종합지원시스템(이하 “종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미대상 — 섬 지역 주민의 해상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원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안 제4조(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3	안 제5조(공영항로의 지정·고시 등)	×	• 제3호 —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항로를 지정하여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고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이를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공영항로로 전환하는 항로의 수 및 해당 항로 운항 교통편의 규모·운항수 등을 알 수 없어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참고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사업을 통해 채산성이 없어 사업자가 운항을 포기한 항로를 보조항로(2025년 기준 29개)로 지정하고 운항결손금의 100%를 국비로 지원 중으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9개 보조항로를 모두 제정안에 따른 공영항로로 전환하여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공영항로로 전환하는 항로의 수 등 추가재정소요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td><td>채산성이 없어 사업자가 운항을 포기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선박을 건조하여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 운항결손금 100% 국비 지원 ※ 「해운법」 제15조 근거</td><td>20,032</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채산성이 없어 사업자가 운항을 포기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선박을 건조하여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 운항결손금 100% 국비 지원 ※ 「해운법」 제15조 근거	20,032
사업명	사업개요	2025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채산성이 없어 사업자가 운항을 포기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선박을 건조하여 경쟁입찰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 운항결손금 100% 국비 지원 ※ 「해운법」 제15조 근거	20,032							
4	안 제6조(해상대중교통시설 축조 및 서비스 등의 지원)	×	• 제3호 -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객의 안전한 승·하선을 위해 축조해야 할 시설이나 지원해야 할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 교통약자의 편의시설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사업을 통해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 중임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여객터미널 운영의 내역사업)</td><td>교통약자의 여객선 승선이 곤란한 선착장에 승하선 편의시설을 설치</td><td>1,110</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여객터미널 운영의 내역사업)	교통약자의 여객선 승선이 곤란한 선착장에 승하선 편의시설을 설치	1,110
사업명	사업개요	2025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여객터미널 운영의 내역사업)	교통약자의 여객선 승선이 곤란한 선착장에 승하선 편의시설을 설치	1,110							
5	안 제7조(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							
6	안 제8조(선박 건조자금 등의 지원)	×	• 제3호 - 제정안이 선박 건조자금 등의 지원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선박의 수, 지원 규모 및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현재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 연안선박의 신규건조 등을 지원하고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연안선박 현대화 펀드</td><td>연안선박의 안전 확보 및 중 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 부가 출자하여 노후 연안선박 의 신조를 지원</td><td>20,000</td></tr><tr><td>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td><td>연안선박의 안전과 현대화를 위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도입(신규건조 등) 자금을 금 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 분에 대한 이자 지원</td><td>11,851</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연안선박의 안전 확보 및 중 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 부가 출자하여 노후 연안선박 의 신조를 지원	20,000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연안선박의 안전과 현대화를 위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도입(신규건조 등) 자금을 금 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 분에 대한 이자 지원	11,851
사업명	사업개요	2025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연안선박의 안전 확보 및 중 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정 부가 출자하여 노후 연안선박 의 신조를 지원	20,000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연안선박의 안전과 현대화를 위해 내항여객선 및 화물선 도입(신규건조 등) 자금을 금 융기관에서 대출할 경우 대출 분에 대한 이자 지원	11,851										
7	안 제9조(운임과 요금 의 지원)	-	• 미대상 - 해양수산부는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현 행 사업을 실시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확대 여부 및 규 모 등을 알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5</th></tr><tr><td>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td><td>-사업내용: 섬 주민 대상 여 객선 운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06년~계속 - 지원방법: 지자체 보조 (국비5:지방비5) - 사업시행주체: 8개 광역지 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 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td><td>13,176</td></tr></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내용: 섬 주민 대상 여 객선 운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06년~계속 - 지원방법: 지자체 보조 (국비5:지방비5) - 사업시행주체: 8개 광역지 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 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176			
사업명	사업개요	2025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내용: 섬 주민 대상 여 객선 운임 일부 지원 - 사업기간: '06년~계속 - 지원방법: 지자체 보조 (국비5:지방비5) - 사업시행주체: 8개 광역지 자체(인천, 경기, 충남, 전 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176										
8	안 제10조(여객터미 널 및 접안시설 등 지 원)	×	• 제3호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선 및 도선 이용객의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설·장비·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지원을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객터미널 및 접안시설별 지원 필요 시설·장비·서 비스 등의 현황 파악 및 시설 개선의 기준 등이 선 행적으로 마련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그 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9	안 제11조(해상대중 교통종합지원시스템 의 구축·운영 등)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예매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조합원(선사)의 전산매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4조의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 중 첫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정부의 유사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면,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농어촌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범사업 운영 연구(국토교통부, 2019.8.~2020.5. 97백만원)
 - 제3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2025년 발주, 100백만원)

[표 2]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100	-	-	-	-	100	20

주: 유사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연구용역 단가의 증감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여객선 기항지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기항지 현황) 여객선 기항지는 총 328개소로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에 35개소,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 구역에 128개소, 그 외 소규모 항포구*에 165개소가 위치

* 소규모 항포구는 「항만법」, 「어촌·어항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항포구

- 기항지 위치에 따라 소관법령·관리주체·예산지원 방식이 다르고, 이에 속한 여객선 접안시설 관리 방식도 상이

[표] 기항지 접안시설 관리 현황

합계		항만(35개소)		어 항(128개소)			소규모 항포구
		무역항	연안항	국가	지방	어촌정주	
328개소		16	19	34	42	52	165
관리주체	국가	11	10	34	—	—	—
	지방	5	9	—	42	52	165
예산지원 방식		국비 100% (교특)			시·군·구		시·군·구 —

- (관리주체별) 항만 및 어항은 국가관리 및 지방관리로 구분하여 관리
 - 국가관리 항만 내 위치한 기항지는 항만 기본계획에 따른 ‘항만개발 및 관리(교특)’사업으로 국가 직접 관리(국비 100%)
 - 지방관리 항만 내 위치한 기항지는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 지원 종료
 - 국가어항 내 기항지는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어항(농특)’사업(국비 100%), ‘국가어항관리(농특)’사업으로 정비·유지·보수 중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어촌정주어항은 지방이양에 따라 국비 지원 종료
 - 항만·어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항포구는 시·군·구 소관이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통해 선정된 곳에 접안시설 개선 지원